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0043
	최초등록일	2014. 01. 10
	최종등록일	2024. 11. 14

[상돈이비빔돼지]

정 보 공 개 서

[상돈이비빔돼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 위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번 호	054-462-0030	팩 스 번 호	-
담 당 사 업 부 서	가 맹 사 업 팀	담 당 부 서 전 화	054-462-0030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150-17 신평상가 108호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 가맹사업 「상돈이비빔돼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자
- * 귀하 : 당사와 「상돈이비빔돼지」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소		
상돈이 비빔돼지	상돈이비빔돼지	구미시 신평동 150-17 신평상가 108호		
	법인등기설립일자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개인사업자	2010. 6. 15	김 윤 정	462-0030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513-16-63986

2. 최근 3년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1)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브랜 드 명	상돈이비빔돼지	
상 호	상돈이비빔돼지 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상돈이	등 록 제41-0258132호
	상돈이 비빔돼지찌개	등 록 제41-0234236호
광고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2) 브랜드 소개

[동의보감]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게 하고, 음기를 보하며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의 체력이 허약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 되고 특히 피로해소 비타민인 티마인(B1)을 독보적으로 함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가지 이상의 쌈채소(깻잎, 케일, 쌈추, 적겨자, 상추)는 여러 비타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함께 찌개안에 들어가는 마늘은 항암작용 및 면역력을 키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찌개의 양념과 육수에는 20여가지의 엄선된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여 한단계 높은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 근거자료는 [별첨1] 참조

(단위/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09,226,476	95,848,182	13,378,294	417,924,724	7,027,399	12,883,595
2022	144,834,410	94,607,617	50,226,793	486,647,142	33,370,073	36,848,499
2023	198,318,951	148,176,048	50,142,903	557,307,418	52,328,382	49,916,11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의 매출액 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 윤 정	대 표	2010.06 ~ 현재	상돈이비빔돼지	업무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2 서비스표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구분	명 칭	출원 및 등록 사항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서비스표)	상돈이	출원일자 2012. 4. 12 등록일자 2013. 5. 6	출원번호 20120012586 등록번호 제 41-0258132 호	전 상 학 (배우자)	2033. 5. 6
	상돈이 비빔돼지찌개	출원일자 2011. 1. 26 등록일자 2012. 6. 21	출원번호 20110002408 등록번호 제 41-0234236 호	전 상 학 (배우자)	2032. 6. 21
관리범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사용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이 없습니다.

6. 최근 3년 「상돈이비빔돼지」 외 당사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직전 3년간 [상돈이비빔돼지] 외에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이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알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5곳 미만
서울	-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상돈이비빔돼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직전사업연도(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기 간	지출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광고	해당사항없음		
판촉	해당사항없음		
합계	해당사항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별첨 3]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 협	리테일고객부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83번지 (동구미지점)	054-461-6742

-가맹금 예치 절차 및 구비서류-

항목		내용
농협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 신청서 교부 →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가맹금예치 증거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 신청서 교부 → 농협 인터넷 뱅킹 접속 → 기업서비스 클릭 → 가맹금 예치제도 클릭 → 가맹점 사업자 클릭 → 가맹금 예치 클릭 → 가맹금 예치 완료
농협 계좌가 없는 사업자		농협 계좌 개설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가맹금 예치 신청서 (가맹본부 발행)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이 개설시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농협에서 농협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가 승인을 하기위해서는 농협 인터넷 뱅킹 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서는 불가능 하여 본인이 직접 내방 하셔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원 /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대가 2. 영업표지 및 사용대가 3. 노하우 제공의 대가 4. 개업지원의 대가 5. 기타 자료제공의 대가	5,5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1,1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	1,000,000 (VAT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 배상액을	미납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공하는 금액		정산 후 반환	
--	--------	--	---------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 원 / VAT 포함)
가맹비	5,500,000
교육비	1,100,000
보증금	1,000,000 (VAT 없음)
합 계	7,6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별첨4'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99 m² 기준 /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될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협력업체	51,000,000 ~ 60,000,000	1,700,000 ~ 2,000,000	개별계약	발주 전 소요비용 공제후 반환
간판 및 외부	협력업체	4,500,000 ~ 6,000,000		“	“
설비/집기	협력업체	12,000,000 ~ 14,000,000		“	“
원/ 부재료	가맹본부	3,300,000 ~ 4,400,000		“	“
합계	-	70,800,000 ~ 84,400,000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

자인제공, 도면제공, 관리감독, 검사의 대가로 3.3 m² 당 ₩110,000(VAT 포함)를 위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지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 당사는 신규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가맹희망자가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3)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입니다.

6) 가맹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첨부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납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 분	내 역	지급 상대방	금액(단위:원/ VAT 포함)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가맹본부	매월 11,000	매월 5일에 자동이체	후불로 반환 안됨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개별청구	교육실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보수 교육	가맹본부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개별청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광고 및 판촉비	광고, 판촉	가맹본부	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개별청구	광고 및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시스템 사용료	지정업체	별도지급	개별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환경개선 비용	간판,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등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지연이자	계속가맹금, 원·부재료상품대금, 지체배상금, 위약벌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금액에따른 이자이므로 반환되지 않음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이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수시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의 재고와 비교	수시	

-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구입과 판매에 관련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를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반환불가 사유	비고
갱신비	132,000	계약연장 (갱신) 3일전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승계여부	관련계약조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대하여 제 16조 2항에 따라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4조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10조
3) 가맹본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비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6조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양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 육 비	양수 전 교육비	1,100,000	교육 이후 반환, 단 오픈 전 해약시 위약벌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 (VAT 없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조치 사항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 종료 후의 조치	관련계약조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당 일금 이만원 (W2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 18조제 3항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때까지(계약이행보증금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박을 때까지) 제 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 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때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공급된 원,부자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 하여 결정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상돈이비빔돼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경제적이익을 수취하는 특수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주메뉴	부메뉴
	비빔돼지	촌두부
제한내용 및 조건	상기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의 상품·용역을 제공은 당사의 승인없이 취급할 수 없음	
위반시 책임	- 1회 위반: 구두경고 - 2회 위반: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 운영권 제한 또는 2회서면 시정요구 후 계약해지	
비고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당사는 「상돈이비빔돼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해지	
다른 가맹사업자등 소비자 외 제3자	가.의 상품·용역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 VAT포함)	가격통보방법	비고
비빔돼지	9,000	변경 14일 전 서면 또는 방문하여 통보	2023년 12월 기준
촌두부	4,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상돈이비빔돼지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라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라는 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제12조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제12조
특정 가맹점 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제12조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상돈이비빔돼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 「상돈이비빔돼지」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시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36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 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 37조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2개월에 걸쳐 3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제 3자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 매뉴얼이나 세부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 표시에 해당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할 경우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7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7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 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서 3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 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관령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등에
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정보 공개서 상
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 운영권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 운영권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 운영권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상속,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신규교육과 신규교육비 일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당사의 브랜드의 메뉴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자로 하여금 당사의 승인없이 「상돈이비빔돼지」와 동종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1:00(10시간)	월 26일 이상

- 당사의 영업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방침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10시간은 최소 영업시간이며 그 이상을 영업하는 것에 관련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 사업자가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메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 기록표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중 1/N (N:가맹점 수)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 30%중 1/N (N:가맹점 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관련계약조항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4조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제25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보호	관련계약 조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2조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관련계약조항
개점 전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 변심에 의하여 해지·중단·종료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후 3일 이내의 경우에는 예치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일 이후에는 1일(日)당 일금 이만원(W20,000)을 추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 16조 5항
원·부재료의 요구 품목 또는 의뢰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시에는 공급 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6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7조 6항

:일금 이십만원(W200,000) × 계약기간 잔여월수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이만원(W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8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이후 제39조 1,2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 제 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일금 삼천만원(W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9조 4항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 41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IV.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전지급방법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농협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 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54-462-0030)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문의: 가맹사업팀 (054-462-0030)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로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방법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등	합숙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후 개점전 까지	필수교육
수시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 수렴, 가맹점 운영사항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7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등을 통지	필수교육
보수교육	가맹점 관리 및 운영 등	실습교육 개별강의	교육실시 7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	비용 (단위:원 / VAT 포함)	비고
신규교육	5일	1,1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개별협의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필요시 실시
보수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면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종업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유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 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개시 승인 거부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북	본점	구미시 구미대로 399, 108호(신평동, 신평상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13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57,307,418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054-462-003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별첨 2] 서비스 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별첨 3] 가맹금예치제도 이용확인서

[별첨 4]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별첨 5]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별첨 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 7]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 8] 직영점 리스트

[별첨 1]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서비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가맹금예치제도 이용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4]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5]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7] 가맹금 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8] 직영점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